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94호)

심사보고서

1998. 8.

총무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8. 8. 17 고성군수
- 나. 회부일자 : 1998. 8. 19
- 다. 상정·의결일자 : 1998. 8. 25 상임위원회 상정·의결

2. 개정사유

- 축산물의 소비감소에 따른 소값 하락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등 농어촌 경제의 불황이 계속되고 있어 소값 안정을 통한 농어촌경제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경상남도로 부터 시달된 표준안에 의거 농어민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한하여 1999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도축세를 면제하여 농어촌경제 안정에 기여코자 함.

3. 주요골자

- 농어민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한하여 1999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도축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안 제24조의 1)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IMF 경제파동으로 축산물의 소비감소에 따른 소값 하락으로 농어민의 어려움이 날로 가중되고 있어 안정적인 소값 유지를 위하여
- 농어민의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대하여 부과하는 도축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 경상남도로 부터 시달된 감면조례표준안 근거에 의거 농어촌 경제불황 대책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하였음.

5. 질의 및 답변

- 문 : 자가도축 기준은 없는지
- 답 : 별 기준은 없으며, 도축가능한 소에 한함.
- 문 : 98년말까지 도축세 감세 추정액은
- 답 : 약 200만원정도 도축세 감세 추정.

6. 토 론 : 없음

7. 심사결과

- 1998. 8. 25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